

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임헌호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9. 18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14호로 2023년 9월 6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 
발의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 
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 
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(안 제3조)

나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 
「유통산업발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3. 9. 8. ~ 9. 12.) 결과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요건 중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(신청 절차)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1/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조항을 삭제함.

### ○ 검토 결과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20년 일부개정을 통해 ‘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원받지 못하던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된 조례임.
-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한 조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자치법규안<sup>1)</sup>을 통해 권고한 사항으로, 서울시 내 타 자치구도 골목형상점가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,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두고 있는 서울시 내 21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2021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

1)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법-4355(2021.12.30.) 및 108(2022.01.11)

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, 동의요건을 당초에 두지 않았던 도봉구 포함 15개 자치구<sup>2)</sup>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1/2이상의 동의 요건을 두지 않고 있음.
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--

2) 중구, 강동구, 광진구, 양천구, 서대문구, 성북구, 관악구, 구로구, 노원구, 강북구, 마포구, 용산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종로구  
(도봉구는 제정 당시부터 동의요건을 두지 않았음.)

# 참 고 자 료

##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**제11조의2(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)**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활성화 지원,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,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예 관한 특례, 국·공유지 사용료등 감면,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, 시장분쟁조정위원회, 상인연합회,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45조,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,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상점가”는 “골목형상점가”로 본다. [본조신설 2020. 2. 11.]